

광주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9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1165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3,729,27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6. 3. 29. 및 2016. 5. 12. ‘F’을 운영하는 A와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A는 G 주식회사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각 제출하고 G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각 받았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6. 3. 29.	85,000,000원	76,500,000원 (72,675,000원으로 감액됨)	2018. 3. 28. (2019. 9. 27.로 연장)
2	2016. 5. 12.	720,000,000원	648,000,000원	2017. 5. 11. (2020. 5. 8.로 연장)

나. A는 2019.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2.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1)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A는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30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계속 중인 2020.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8. 이 사건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수계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3,729,27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2021. 10. 18.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배당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19. 7. 30. A 소유의 전남 해남군 H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2019. 9. 28.에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729,271원을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점, ④ A가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30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20.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정한 파산채권자인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는 위 행위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편파행위로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제1심 증인 A,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대부업자이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② A는 제자인 I에게 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알아보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남편인 M과 잘 아는 사이인 J(피고의 남편)를 A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A는 당시 I에게 '세금을 안 막으면 부도가 나니까 돈을 빌려달라. 밀린 보험료가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사정을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J에게 '세금과 4대 보험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서 살 수가 없으니 2억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A를 소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③ A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A에게 실제로는 1억 2,000만 원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A는 실제 차용한 돈보다 2배나 많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차용증 상의 차용금과 동일한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대출거래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행사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21. 10. 18.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3,729,27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이유로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되어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위 23,729,27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이미주, 판사 김연경, 판사 남수진

부동산의 표시

1. 해남군		전 620㎡
2. 해남군		답 122㎡
3. 해남군		전 334㎡
4. 해남군		전 2912㎡
5. 해남군		전 2351㎡
6. 해남군		전 6972㎡. 끝.

1)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